

2. 회의

1) 법인이사회

(1) 제10차 회의

☞ 일 시 : 2018. 11. 6(화) 12:20

☞ 장 소 : 사랑의교회

☞ 결의사항

- ① 103회기 사업계획안을 받기로 하되, 계획안에 있는 1)권역 강화를 위한 권역위원회 조직중 서북권역위원장과 전북권역서기는 임원회에 위임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실행이사회비는 각 권역위원회에서 납부를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되 감사를 받기로 결의하다. 5)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인사(人事) 부분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법인이사에 오정호, 정영교 목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사무국과 3팀 개편건은 지원팀- 이종민, 교육팀 - 김태훈, 복지팀 - 주연종목사로 하기로 하다.
- ② 재정 보고는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여 공지하되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③ 103회 총회에서 결의된 미자립 교회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④ 농어촌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위원회 지원팀에서 파악하기로 하다.

(2) 제11차 회의

☞ 일 시 : 2019. 5. 27(월) 12:00

☞ 장 소 : 수서역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권역위원회 조직 및 발대식 결과는 별지대로 보고 받기로 하다.
- ③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총 94명 선정하여 각 200만원 씩 지원하였으며 세부 관련 내용은 별지대로 결과 보고를 받고 추인하기로 하다.
- ④ 권역위 서기단 MT 결과는 별지대로 보고 받고 추인하기로 하다.
- ⑤ 하기한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지침을 전국 노회에 공문 발송하기로 하다.

변경 전	변경 후
부위원장(노회장 당연직)	부위원장(노회장 당연직)
서 기(노회 서기 당연직)	서 기(자립위원 중에서 선임)
회 계(노회 회계 당연직)	회 계(자립위원 중에서 선임)

*노회 서기와 회계는 자립위 임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자립위 임원(서기와 회계 등)은 자립위원회에서 선정

- ⑥ 정관 제3장 제6조 2항에 의거 권역위원장 배만석 목사, 안흥대 목사의 선임 이사 확인 및 인사하다

(3) 제12차 회의

☞ 일 시 : 2019. 8. 22(목) 11:00

☞ 장 소 : 대전중앙교회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미자립교회” 용어 변경 공모 선정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 받고, 새로운 용어인 “미래자립교회”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다.
- ③ 교회자립지원 매뉴얼 제작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매뉴얼 제작을 결의하다.
- ④ 교회자립개발원 정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 ⑤ 제103회기 사업결과를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⑥ 제104회기 사업계획을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⑦ 제103회기 결산은 보고대로 받되, 제104회기 예산은 총회 지원금을 2억원으로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⑧ 제104회기 총회 청원안은
 - 가.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의 건과
 - 나. 각 권역 지원금과 교회 자립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2 억 원의 재정청원의 건과
 - 다. 농어촌 교회, 다문화 문제, 도시개척 목회 등에 대하여 총회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의 건위의 문제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2) 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2. 7(금) 8:00

☞ 장 소 : 대전역

☞ 결의사항

- ① 이현재 씨를 교회자립개발원 대리로 채용하되 급여 및 구체적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다.
- ② 사무국 총무 김천 목사에게 퇴직금 700만원과 전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2년분을 납입해 주기로 하다.
- ③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별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④ 지난 임원회에서 결의한 권역 위원회 발대식과 2019년도 법인이사 및 연구위원 연수는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다.
- ⑤ 서기 박성규 목사를 실무부이사장으로 부서기 류명렬 목사를 서기로 직위 변경하기로 하다.
- ⑥ 임원 수련회를 2019년 1월 3일(목)-4일(금) 부산에서 갖기로 하다.
- ⑦ 각 권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1)권역임원 구성 모임 2)권역 실행이사 전체회의 3) 권역별 장학금 전달식을 갖기로 하고, 각 권역의 일정은 서기 류명렬 목사가 조정하기로 하다. (각 권역 방문은, 실무부이사장과 서기, 그리고 임원들이 형편에 따라 참여한다.)
- ⑧ 김천 목사를 교회자립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다.
- ⑨ 사무국 총무 부재로 인하여 1국 3팀의 진행은 서기와 협의하고, 최종 실무부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 3(목) 11:40

☞ 장 소 : 부전교회

☞ 결의사항

- ① 2019년도 사역과 정책 공유를 위하여 총회 산하 유관기관(농어촌부, 이만교회운동본부, 전도

부)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각 기관의 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 간담회의 주관은 총회 총무가 하고, 식사와 여비는 자립개발원에서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지금까지의 권역별위원회 조직 상황을 서기가 보고하고, 2019년도 103회기 주력 사역을 권역위원회 조직과 전국 미자립교회 지원현황을 실효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각 권역별 간사를 세워, 지원현황 및 통계 작성의 임무를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
(단 통계작성 사업은 프로젝트화 하여 약간의 사례비를 각 권역 간사에게 지원하기로 하되, 지원규모는 보고의 완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다.)
- ③ 본원 이현재 대리의 발령을 서기가 보고하고, 지원현황 및 통계작성은 자립지원팀장인 이종민 목사가 사무국 직원과 각 권역의 간사를 총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다.
- ④ 시간이 오래되어 정회하고 익일 개회하기로 하니 3일(목) 오후 10:40이더라.
파라다이스호텔 1층 커피숍에서 4일(금) 오전 11:00에 속회하다.
- ⑤ 103회기 장학사업의 공고 및 심사 선발은 기존과 같이 본원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목사)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장학증서 전달식은 각 권역위원회에서 하기로 하다. 각 권역위원회 발대식과 장학증서 전달식은 2019년 3월 중에 각 권역별로 시행하기로 하다.
- ⑥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감사부와 협조하기로 하고, 박성규 실무부이사장이 협력하기로 하다.
- ⑦ 각 권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원의 임무 및 역할, 그리고 103회기 주요 사업 일정을 이종민 목사가 초안 작성후, 임원들이 결정한 후, 권역위원장 면담 시 그 내용을 전달하여 명확한 임무를 알고 권역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다. 이미 면담이 끝난 권역의 경우는 서면 또는 권역서기가 위원장과 임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5. 13(월) 17:00

☞ 장 소 : 광주겨자씨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 ② 2019 권역위 서기단 MT 결과 보고를 받고 평가 및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다.
- ③ 법인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가. 소집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낮 12시
나. 장 소 : 수서역
다. 안 건 : a. 권역위원회 조직 및 발대식 결과 보고의 건
b.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학자금 지원 결과 보고 및 추인의 건
c. 권역위 서기단 MT 결과 보고 및 추인의 건
d.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지침의 건
- ④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당연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가. 노회 임원(서기, 회계)의 노회 교회자립위의 임원 당연직은 지양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 노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자립위 임원은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제8장 25조 2항(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한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6. 27(목) 10:00

☎ 장 소 : 전주대자민병원

☎ 결의사항

- ① 제103회기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보고 현황을 확인하고 미보고된 노회들을 대상으로 보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소속 권역위원회에 독려하도록 하다.
- ② '미자립교회'란 명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 대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명칭 사용을 위하여 전국 교회에 용어 변경을 공모하기로 하고 7월 9일(화) 기독교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
- ③ 새롭게 제작되는 브로슈어는 '미자립교회' 용어 변경 채택 후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변경 및 총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감안하여 104회기 총회 후 제작하기로 하다.
- ④ 기존 텍스트 및 사진으로 제작되던 뉴스레터의 포맷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⑤ 법인이사회 및 제4회 정기 실행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고 7월 9일(화) 기독교신문에 소집 공고하기로 하고 개최 장소 교회에 협조 공문 발송하기로 하다.

가. 소집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1시 법인이사회
 오후 1시 실행이사회

나. 장 소 :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 시무)

- ⑥ 제4회 정기 실행이사회 준비 및 기타 실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소집하기로 하다.

가. 법인이사회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총회회관

나. 법인이사회 임원 및 팀장, 권역 서기 연석회의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대전남부교회

3)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4. 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권역위원회 조직 관련하여 각 권역위원장들에게 이사장 명의로 감사 및 격려 화환화분 보내기로 하다.
- ②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과 각 권역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와 함께 오찬을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다.

가. 일 시 : 5월 중 예정

나. 장 소 : 미정

다. 참석대상 : 본원 이사장 및 임원, 팀장, 각 권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기 총 40명 내외

라. 주 제 : 권역발대식 브리핑, 권역위원회의 역할 / 방향 설명

마. 준비사항

복지팀장/임원회 서기 - 세부 일정 확인 및 조율

지원팀/교육팀 - 주제 설명 자료(PPT) 제작

재정지원 협조 - 사랑의교회

- ③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종교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된 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쉬운 매뉴얼 제작하기로 하다. 매뉴얼 제작은 복지팀장 주관으로 전문인들로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 및 매뉴얼 관련하여 기독교신문에 실무부이사장 인터뷰 및 홍보하기로 하다.
- ④ 추후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목표는 권역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전국 155개 노회에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다. 학자금 지원 후원금 모집 및 운영 세부 정책안은 복지팀에서 연구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기로 하다.
- ⑤ 제3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후원교회에 4월 19일(금)까지 이사장 명의의 감사 카드 및 답례품(합죽선)을 전달하기로 하고 복지팀 및 회계 김형원 장로가 감사 카드 및 답례품 준비하기로 하다.
- ⑥ 각 권역에서 실시하는 공문 및 행정 양식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양식에 맞게 통일하기로 하고 각 권역위원회에 표준화 공문 및 권역위 역할 및 할 일 등 지침 보내기로 하다.
- ⑦ 교육팀의 103회기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후 세부적인 진행계획 및 실행은 실무 부이사장과 서기, 교육팀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⑧ 권역위원회 서기단 M.T를 1박 2일로 5월 27일(월) ~ 28일(화) 갖기로 하고 세부 진행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7. 1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 ② 미자립교회 용어 공모 사업의 진행사항과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되 교단 차원에서의 용어 사용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중 총회 총무 및 기획행정국장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가. 자료검토 : 2019. 7. 26. ~ 27
나. 1차심사 : 2019. 7. 30.
다. 2차심사 : 2019. 8. 6. 낮 12시
- ③ 교회자립개발원 및 사역과 관련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 사역과 관련한 실행 매뉴얼을 포함한 개발원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폭 넓은 차원에서의 자료집을 만들기로 하다.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및 공지 등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작 및 관리하기로 하고 구체적 진행을 위하여 2019. 8. 6(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갖기로 하다.
- ④ 새롭게 제작되는 브로슈어는 개발원 및 사역에 대하여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및 도식화된 그림을 사용하여 제작하기로 하고 지원팀장 및 교육팀장 주관하에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제104회 총회 시 홍보 부스 및 운영 방안 관련하여 개발원 실무자 및 권역실무자로 구성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브로슈어 및 영상 자료 제작과 필요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다.
- ⑥ 기존 뉴스레터 제작 개선 관련하여 교육팀장이 기획 및 연구하여 차기회의 시 보고하기로 하다.
- ⑦ 교회자립 아카데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받고 세부 진행 계획 및 수정 방안은 교육팀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받기로 하다.

- ⑧ 제103회기 사업결과 보고 및 제104회기 사업계획 보고는 별지대로 받기로 하되 미자립교회 학자금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건은 차기 권역위 서기 연석회의 시 다루기로 하고 104회기 예산 청원 관련하여 각 팀별, 권역 보조금 등 세부 사항 확인 및 계획 후 검토하여 청원하기로 하다.
- ⑨ 통계 입력 중 교회의 후원 현황 입력 관련하여 미자립교회 후원금을 노회에서 취합하여 각 미자립교회로 배분하는 경우 후원 현황 통계 입력은 노회에서 배분하여 지원하는 현황을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 항목에 입력하는 것으로 하다.
- ⑩ 현재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및 권역위원회, 노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명칭 관련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칭 변경 및 약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다.

명 칭	변경 후 명칭	약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자립개발원	-	총회자립원
권역별지회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	권역 자립위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노회 자립위

- ⑪ 임원 및 팀장 회의 소집공문은 SNS를 활용하여 통보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8. 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미자립교회 용어 공모 선정작 관련하여 법인이사의 과반수 동의 회신을 최종 결정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선정하기로 하다.

가. 선정 기준

- 1) 기존의 지역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2) 용어가 “미자립교회”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라는 선명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 3) 용어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용어이어야 한다.
- 4) 자립을 지향하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
- 5)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지원교회- 자립교회 - 000교회”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운율적인 부분도 고려한다.

나. 선정작 및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선정작
최우수작	100만원	미래자립교회

다. 결과발표 : 2019년 8월 13일(화) 기독교신문 기사 / 홈페이지 공고

라. 시상식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1시 대전중앙교회(정기 실행이사회 시 시상)

- ③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가.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을 위한 팀을 조직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유홍선 목사를 팀장으로 팀원 구성은 팀장에게 맡기기로 하고 팀원 관련 협조공문은 팀원 구성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소속 노회장 및 권역위원장에게 발송하기로 하다.

나. 편집 및 디자인은 제작비 및 제작 효율성을 고려하여 총회 출판국에 의뢰하기로 하다.

다. 매뉴얼 제작 관련 진행사항 및 재정 보고는 서기 및 회계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라.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 관련하여 8월 21일(수) 임원 및 팀장, 권역 서기 회의 시 매뉴얼 가안을 팀장에게 보고 받고 8월 22일(목) 법인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④ 현재 개발원 정관의 수정 및 보완, 변경 등에 관한 관련 건은 실무부이사장 및 서기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4) 임원 및 팀장, 권역 서기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8. 21(수) 11:00

☞ 장 소 : 대전남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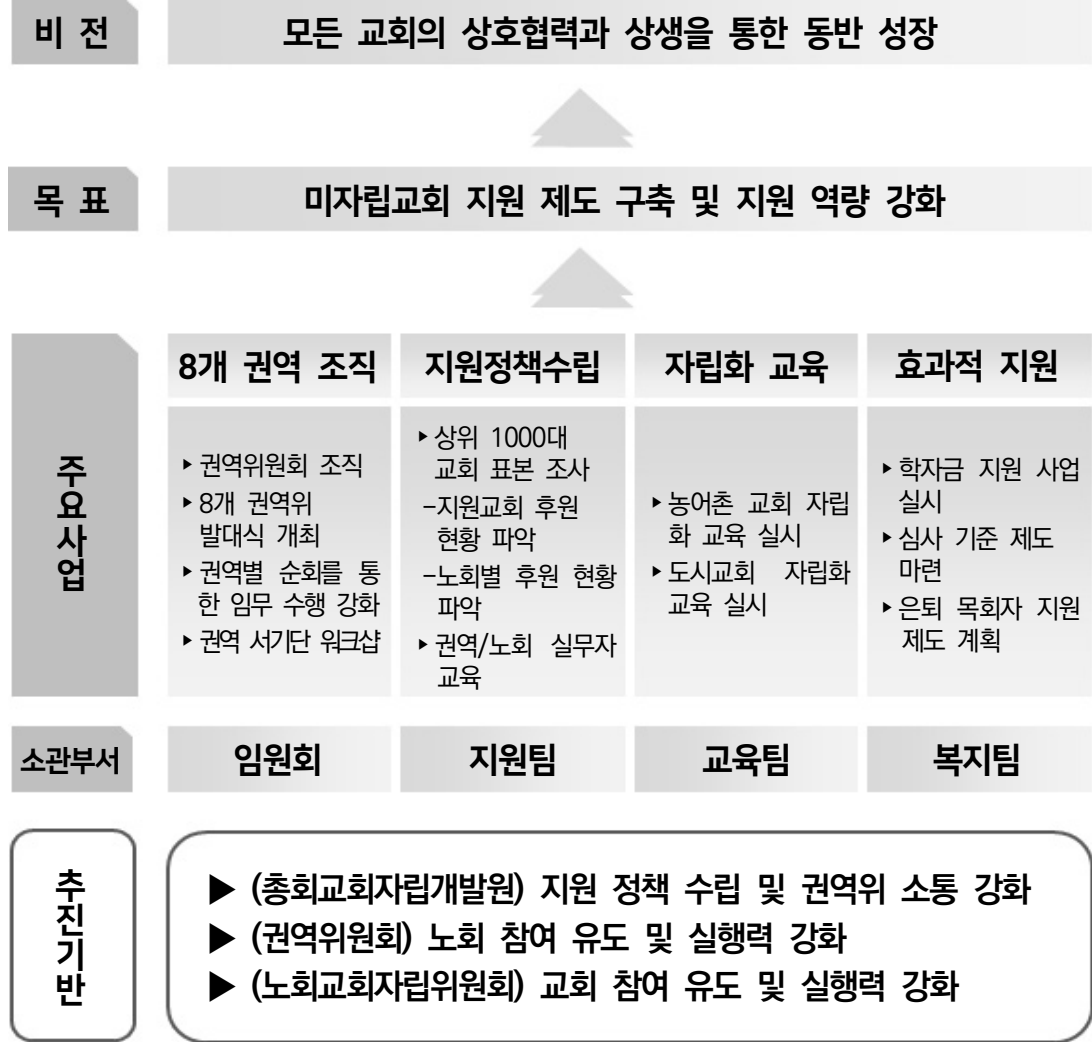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채택하다.
- ② 미자립교회 대채 용어 선정의 건은 안건 자료(별지)대로 보고 받다.
- ③ 권역 발대식 이후 활동 및 사업 현황의 건은 안건 자료(별지)대로 보고 받되 경기권역 세미나 일정 추가하기로 하다.
- ④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 관련하여 가안을 유홍선 목사로부터 보고 받다. 매뉴얼 가안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눈 후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 확정 및 용어 관련 정관 변경 절차를 감안하여 104회 총회 이후 10월 초 인쇄 및 노회 배포하기로 하다.
- ⑤ 매뉴얼 제작 관련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및 세칙에 대한 검토는 복지팀장 주연중 목사에게 맡겨 연구기로 하다.
- ⑥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 방안 관련하여 각 권역에서 선발 및 지급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재원 마련은 10월까지 각 권역 임원 및 개발원 임원이 후원교회 재원 마련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다.
- ⑦ 정관 개정 관련하여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⑧ 104회기 팀별 중점 사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되 자립 아카데미 관련하여 본원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은 전국 8개 권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적 사항은 교육팀장 김태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보고 받기로 하다.
- ⑨ 권역 서기단 M.T.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 가. 대상 : 법인이사회 임원, 팀장, 권역 서기/총무
 - 나. 일정 : 2019년 10월 29일(화) ~ 30일(수)
 - 다. 장소 : 법인이사회 임원에게 위임



3. 제103회기 주요사업보고

1. 103회기 주요사업과 목표



2. 주요 사업 보고

가. 8개 권역 조직

- 교회자립개발원의 정관에 따라, 총회 교회자립개발원과 전국 155개 노회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각 지역의 현실을 잘 이해하며 지도할 수 있는 권역위원회를 출범시켜, 교회자립개발원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함

1) 추진내용

- 가) 권역위원회 발대식
 - (1) 일시 및 장소

권역	일시	장소
서울	2019.3.10.(일) 오후 7시 30분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 시무)
경기	2019.3.13.(수) 오전10시 30분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시무)
중부	2019.3.18.(월) 오전 11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시무)
광주전남	2019.3.21.(목) 오전 11시	광주동명교회 (이상복 목사 시무)
대경	2019.3.22.(금) 오후 8시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시무)
부울경	2019.3.26.(화) 오전 11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시무)
전북	2019.3.27.(수) 오전 11시	익산천광교회 (안홍대 목사 시무)
서북	2019.3.28.(목) 오전 11시	총회회관

(2) 참석대상 : 각 권역별 임원 및 각 노회 자립지원위원장 또는 실무자, 학자금 지원 선정자

(3) 권역위원회 조직

권역	직책	성명	노회	교회
서울	위원장	화중부	서울남노회	남서울교회
	부위원장	방성일	서울동노회	하남교회
	서기	정명호	경기노회	혜성교회
	회계	조성민	남서울노회	상도제일교회
	총무	이상화	서울노회	서현교회
	위원	박승남	중서울노회	후암교회
	위원	이풍인	동서울노회	개포동교회
서북	위원장	배만석	소래노회	사랑스러운교회
	부위원장	김성근	서평양노회	풍성한교회
	부위원장	배재근	서중노회	천호동원교회
	부위원장	권순용	평서노회	주다산교회
	서기	김수환	서경노회	람원교회
	부서기	강영하	서경노회	늘사랑교회
	회계	윤병수	평남노회	로템교회
	총무	조현석	신안주노회	해운대신일교회
경기	위원장	소강석	경기남노회	새에덴교회
	서기	이상복	수원노회	창훈대교회
	회계	노병선	서수원2노회	오산비전교회
	총무	김상준	수원노회	수원새로남교회



권역	직책	성명	노회	교회
중부	위원장	오정호	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부위원장	김미열	강원노회	원주증부교회
	부위원장	고석찬	대전노회	대전중앙교회
	부위원장	박준유	인천노회	인천학익교회
	부위원장	김신점	충남노회	천안성은교회
	서기	류명렬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회계	서기영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총무	김정민	대전노회	대전예수뜰교회
전북	위원장	안홍대	이리노회	천광교회
	부위원장	유태영	전북남노회	서광교회
	부위원장	봉상태	전북노회	서마나교회
	부위원장	라상기	전북서노회	정읍시민교회
	서기	박윤성	이리노회	기쁨의교회
	회계	김형원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총무	강용덕	이리노회	천성교회
광주전남	위원장	이상복	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부위원장	정태영	빛고을노회	광주양림교회
	부위원장	서종석	함평노회	함평전원교회
	부위원장	공학섭	순천노회	대대교회
	서기	조동원	광주노회	서문교회
	회계	서문석	동광주노회	화순백암교회
	총무	이박행	전남노회	복내전인치유센터
	부총무	한성희	전남노회	수완동명교회
	고문	김광식	목포제일노회	새목포제일교회
	고문	김성천	여수노회	여수제일교회
	고문	맹연환	동광주노회	문흥제일교회
대경	위원장	권성수	대구수성노회	대구동신교회
	부위원장	장영일	대구수성노회	범어교회
	부위원장	김용수	안동노회	영주교회
	서기	김종원	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회계	이종대	대구수성노회	동신교회
	부서기	김호길	경청노회	대산교회
	총무	박영찬	동대구노회	동산교회
	부총무	이윤찬	대구중	참좋은교회

권역	직책	성명	노회	교회
부울경	위원장	이규현	남부산동노회	수영로교회
	부위원장	이현국	남부산동노회	문화교회
	부위원장	강진상	남울산노회	평산교회
	부위원장	전웅구	경남노회	미수교회
	서기	신원욱	동부산노회	남산제일교회
	부서기	홍석진	동부산노회	온천제일교회
	회계	강우만	중부산노회	복성교회
	총무	유홍선	진주노회	예담교회

(4) 평가

- 권역위원회의 조직과 출범으로 교회자립개발원 역사와 사역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
- 각 권역에서 미자립교회를 섬길 실질적인 리더들이 세워졌고, 각 권역에 활동지원금 및 실행이사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음
- 각 권역의 공교회성의 상기 및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각 권역위원회의 실무 세미나들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었음
- 각 권역 발대식 후 본부 임원들과 권역임원, 그리고 각 노회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간담회는 교회자립개발원의 사역과 고민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각 지역 노회와 교회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음

(5) 발대식 후 동향

권역	계획 및 추진사항	일시 & 장소	비고
서울	서울권역 세미나 개최	2019. 9. 10(화) 남서울교회	
경기	경기권역 지원 및 자립화세미나 개최	2019. 9. 6(금) 창훈대학교	
중부	중부권역 세미나 개최	2019. 6. 4(화) 새로남교회	
광주전남	광주전남권역 세미나 개최	2019. 5. 22(수) 광주양림교회	광주권
		2019. 5. 23(목) 순천대대교회	동부권
		2019. 6. 4(화) 무안영산교회	서부권
	광주전남권역 실행위원회	2019. 6. 25(화) 광주동명교회	
전북	전북권역 세미나 개최	2019. 6. 10(월) 익산천광교회	
대경	대경권역 세미나 개최	2019. 4. 25(목) 대구동신교회	
부울경	부울경권역 세미나 개최	2019. 5. 30(목) 부산수영로교회	1차
		2019. 6. 27(목) 부전교회	2차
서북	서북권역 세미나 개최	2019년 9월 예정	

나) 권역위 서기단 MT

- (1) 일시 및 장소 : 2019. 5. 7(화) ~ 8(수) KB증권 연수원
- (2) 참석대상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임원, 각 권역별위원회 서기단 및 실무자



(3) 평가

- 개발원 임원 및 권역위 서기, 실무자간 팀웍이 형성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 친교 및 교제의 시간을 통해 협력 및 동반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
-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권역위원회가 추후 사업을 계획 및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방향을 설정, 제시함
 - 각 권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다름을 이해한 후 하나된 공통 목표 및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됨
- 현재 지원사업이 선행되고 있는 노회의 사례를 청취, 논의 및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권역별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시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음

(4) 발전방향

- 총회교회자립개발원과 권역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야 함
-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중요한 사업인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사업이 진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함
- 효과적 사역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필요
 - 조직관련 : 총회교회자립개발원과 권역위원회,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관계 유지 및 협력 증대
 - 지원사업 : 큰 틀 안에서 통일된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제시

나. 지원을 위한 통계 작업

1) 추진내용

가) 8개 권역 위원장 및 실무자 간담회

- (1) 일시 및 장소 : 2019. 3. 19(화) 대전남부교회
- (2) 참석대상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임원 및 팀장, 연구위원, 권역위 위원장 및 실무자
- (3) 평가 및 발전방향
 -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위하여 60% 이상의 입력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권역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 권역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 증대를 위하여 관계 형성 발전 및 실무 조직 구성, 실행 조직 정상화 시켜야 함

나)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보고서 제출

(1) 조직 보고 현황

2019.8.16. 현재

노회수	조직노회	미조직노회	미보고노회
155개 (해외제외)	134노회	9노회	12노회

(2) 권역별 조직 보고 현황

2019.8.16. 현재

권역	조직 노회	미조직 노회	미보고 노회	조직 현황(%)	비고
서울	19	2	3	79.2	
경기	12	2	-	85.7	
중부	17	-	-	100	
광주전남	18	1	-	94.7	
대경	15	-	3	83.3	
부울경	12	-	-	100	
전북	16	-	-	100	
서북	25	4	6	71.4	
합계	134	9	12	86.5	

▶ 총 155개 노회 중 134개 노회 위원회 조직

▶ 21개 노회 위원회 미조직 및 미보고

(강중, 경기북, 경성, 경평, 남경기, 남대구, 남수원, 대구, 대구동, 동안주, 삼산, 새순천, 서강, 서서울, 서중, 평북, 평서, 평중, 한성, 황동, 황해)

다) 교세통계 보고 현황(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

2019.8.16. 현재

노회수	교회수	지원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미보고교회	보고율	전 회기 대비
155노회 (해외제외)	11,302 (▼112)	2,486 (▲2)	2,410 (▼53)	3,511 (▼179)	2,895 (▲118)	74.4%	-1.4%

※ 괄호안의 값은 전 회기 대비 등락 값

라) 각 권역별 교세통계 보고율(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

2019.8.16. 현재

권역	교회수	지원 교회	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	미보고 교회	후원/피후원 현황 보고율(%)	교세통계 보고율(%)	전 회기 대비
서울	2,086	527	398	622	539	4.4(92교회)	74.2	-0.8%
경기	899	210	148	269	272	3.7(33교회)	69.7	-0.5%
전북	1,006	203	269	307	227	11.6(117교회)	77.4	-2.4%
광주전남	1,534	304	356	514	360	4.4(68교회)	76.5	-3.7%
서북	2,551	498	492	697	864	3.7(95교회)	66.1	-1.1%
중부	1,408	267	304	529	308	10.9(153교회)	78.1	-1.2%
대경	1,001	254	282	296	169	9.8(98교회)	83.1	-2.4%
부울경	817	223	161	277	156	18.2(149교회)	80.9	1.2%
합계	11,302	2,486	2,410	3,511	2,895	7.1(805교회)	74.4	-1.4%



마) 평가 및 발전방향

- (1) 전 회기 대비 교세통계 입력률 1.4% 하락하였음
- (2) 통계 입력률은 매회기 70%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요 항목인 예산현황, 후원/피후원 현황 등 주요 정보 입력이 부족함
- (3) 권역별 활성화를 통해 노회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통계 입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 필요함

다. 지원 사업 강화

1) 추진내용

가) 제3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전달식

- (1) 일시 및 장소 : 각 권역별 발대식과 함께 진행
- (2) 최종 선발 : 94명
- (3) 학자금 지원총액

최종선발	학자금 지원액	총 지원액	비고
94명	200만원(1인당)	188,000,000원	(94명 X 200만원)

(4) 심사원칙

- 권역별 노회별로 균등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심사한다.
- 노회와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의 추천을 존중한다.
- 아래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속 노회 교회 자립지원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의료보험 월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자(가족 합산)
 - 해당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
 - 외국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예정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보고가 되지 않은 노회는 제외함

(5) 후원교회(가나다순)

경산중앙교회, 남서울교회, 대구동신교회, 대전남부교회, 대전새로남교회, 람원교회, 부전교회, 사랑의교회, 새에덴교회, 서울광염교회, 수영로교회, 오륜교회, 운화교회, 인천제2교회

(6) 평가 및 발전방향

- 학자금 지원 선발 과정이 선정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됨
- 이번 제3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전달식은 각 권역별 발대식과 함께 진행됨
- 각 권역위원회에서 선발자들을 초청 및 위원장이 시상함으로 권역위원회의 위치 제고 및 역할 증대에 도움이 되었음
- 신청자격 요건 중 교회통계입력 대상자로 자격을 부여하여 교회 통계 입력 관심 증대 및 홍보에 도움이 되었음
- 추후 권역위원회별로 선발 및 전달식 계획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심사 기준 및 지원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제103회기 수입, 지출 보고

◆ 수입

2019. 8. 16 현재

관	항	목	예산	수입
이월	이월금	이월금	100,000,000	144,816,313
지원	총회지원금	총회지원금	100,000,000	100,000,000
회비	이사회비	법인이사회비	144,000,000	105,200,000
		실행이사회비	120,000,000	9,900,000
기타	기부금	일반기부금		400,000
		목적협찬(현)금		30,00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16,920,948
총계			464,000,000	407,237,261

◆ 지출

관	항	목	예산	지출
운영	일반운영	회의비	18,000,000	9,335,500
		업무추진비	14,000,000	8,423,600
		인건비	60,000,000	52,245,910
		경조비	3,000,000	990,500
	사무실운영	관리운영비	20,000,000	17,141,116
		비품/집기비	15,000,000	2,025,500
		인쇄/홍보비	40,000,000	27,037,840
소계		170,000,000	117,199,966	
사업	자립화지원	노회자립위원회세미나	10,000,000	1,000,000
		노회자립위간사세미나	10,000,000	0
		권역활성화	28,000,000	32,001,000
	자립화교육	자립화현장체험수련회	30,000,000	17,993,891
	자립화복지	목회자녀학비지원	100,000,000	55,003,500
		은퇴목회자생활관연구	10,000,000	0
		특별구제	10,000,000	2,000,000
	행사	이사/실행위원세미나	40,000,000	0
		기타행사	20,000,000	18,282,470
	소계		258,000,000	126,280,861
재정	예비비	예비비	36,000,000	16,780,500
총계			464,000,000	260,261,327



4. 제104회기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주요사업계획보고

1. 중점 사역 보고사항

가. 교회자립 교육 강화 - 교회자립아카데미 가동

1) 교회자립 아카데미 커리큘럼 확정 및 실시

가) 기획의도

목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의 목회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은 자립역량을 갖춘 목회자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기에 본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나) 기획목적

총회자립아카데미의 기본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기본 역량 : 목회 소통능력, 미디어 활용능력, 새로운 환경의 적응 능력 등

다) 커리큘럼 내용

- ① 자립목회의 이해 : 새로운 목회 환경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안목을 정립한다.
- ② 자립목회의 태도 : 새로운 목회 환경에 적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정립한다.
- ③ 자립목회의 기술 : 새로운 목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 기술을 교육한다.
- ④ 자립목회의 방법 : 새로운 목회 환경에서의 다양한 목회 방법을 소개한다.

라) 세부 커리큘럼

구분	과목	담당자
자립목회의 이해	미자립교회론 2. 시대와 소통하는 목회	
2. 자립목회의 태도	1. 목회자 영성관리와 목회노하우 2. 목회 행정과 운영(법규, 세금, 사회적 기업등)	
3. 자립목회의 기술	미디어 활용 설교능력 2. sns환경속의 목회방법 3. 목회자 설교 노하우 4. 미디어 활용 목회실습	
4. 자립목회의 방법	1. 지역 맞춤형 목회 소개 (카페, 도서관, 사회적기업 등) 2. 사역 맞춤형 목회 소개 (교육, 전도, 양육 등)	

나.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 강화

- ① 권역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 ② 경상비 상위 2000개 교회 대상 교세통계 보고 전산 입력 우선 독려-권역별
- ③ 권역 내 지원노회 및 미자립노회 현황 파악과 연결
- ④ 홈페이지 및 전산 통계 현황 리뉴얼

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 ① 2월 접수 / 3월 발표 / 4월 학자금 지원금 전달
- ②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연구 및 전달식 계획(권역별)
- ③ 권역별 심사 방안 및 심사 기준 연구

라. 사무국

- ① 홈페이지 유지관리
 - 총회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개발원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 및 예산 마련
 - 노회 및 교회들의 정보 입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② 미자립교회 용어 변경에 수반하는 후속 행정
 - 정관 개정
 - 미자립교회 새용어 및 변경된 사업 및 계획을 반영하는 브로슈어 제작
 - 교회자립 지원 매뉴얼 제작(지원 사업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2. 제104회기 예산 보고

◆ 수입

관	항	목	예산	비고
이월	이월금	이월금	100,000,000	
지원	총회지원금	총회지원금	200,000,000	
회비	이사회비	법인이사회비	144,000,000	
		실행이사회비	권역위원회로	
기타	기부금	일반기부금		
		목적협찬(헌)금		
총계			444,000,000	



◆ 지출

관	항	목	예산	비고
운영	일반운영	회의비	20,000,000	
		업무추진비	15,000,000	
		인건비	60,000,000	
		경조비	3,000,000	
	사무실운영	관리운영비	20,000,000	
		비품/집기비	20,000,000	
		전산/인쇄/홍보비	45,000,000	
	소계		183,000,000	
	사업	자립화지원	권역서기세미나	10,000,000
교육비			30,000,000	
권역활성화			30,000,000	
자립화교육		자립화아카데미	35,000,000	
자립화복지		목회자자녀학자금지원	20,000,000	
		은퇴목회자생활관연구	10,000,000	
		특별구제	10,000,000	
행사		이사/실행위원세미나	40,000,000	
		기타행사	50,000,000	
소계			235,000,000	
재정	예비비	예비비	26,000,000	
총계			444,000,000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 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청원의 건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변경 청원의 건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사역과 관련하여 용어 변경 및 약칭 사용, 직책 추가 및 기타 사항 변경 등에 따른 정관을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2. 재정청원

아래와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금액 : 200,000,000원(각 권역 지원금과 교회 자립아카데미 운영비 포함)

※ 첨 부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끝.

2019년 9월

총 회 교 회 자 립 개 발 원

이사장 오 정 현

서 기 류 명 렬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원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1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자립개발원(약칭 총회자립원 이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총회내의 교회자립을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공교회성을 확립하여 한국교회의 재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능 : 미자립교회의 파악과 지원교회와의 연결, 노회 산하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및 권역별 지회와 상호 소통함으로써 자립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전개 등 교회자립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의 실행을 주 기능으로 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총회 내 의 교회자립을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공교회성을 확립하여 한국교회의 재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능 : 미래자립교회 의 파악과 지원교회와의 연결, 노회 산하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및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권역 자립위) 와 상호 소통함으로써 자립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전개 등 교회자립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의 실행을 주 기능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30(총회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본원 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30(총회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⑥ 권역별 지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지회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제5조 조직 ⑥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위원회 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제3장 법인이사회	제3장 법인이사회
제6조 법인이사회의 구성 ② 법인이사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3 이상은 총회총대이어야 하며, 권역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6조 법인이사회의 구성 ② 법인이사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3 이상은 총회총대이어야 하며,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 직무와 권한 ⑨ 이사 및 권역별 지회장 선임 및 해임	제7조 직무와 권한 ⑨ 이사 및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장 선임 및 해임

원안	수정안
<p>제9조 부 이사장</p> <p>① 이사장을 보조하고 본원 사업의 일부 혹은 위임된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원을 섬긴다.</p> <p>② 법인 이사회는 5명의 부이사장을 둔다.</p> <p>③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이사장 유고시에는 <u>선기명</u> 부이사장이 대행한다.</p>	<p>제9조 실무 부이사장 및 부 이사장</p> <p>① 이사장을 보조하고 본원 사업의 일부 혹은 위임된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원을 섬긴다.</p> <p>② 법인 이사회는 5명의 부이사장을 두고 부이사장 중 1명의 실무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p> <p>③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실무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이사장들과 협의하여 선임한다.</p> <p>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실무 부이사장이 대행한다.</p>
<p>제11조 임원회</p> <p>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구성한다.</p> <p>① 이사장 : 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 이사장 : 의장을 보좌 하며 의장 유고시 <u>선기명</u> 부이사장이 의장을 대행한다.</p> <p>③ 서기 : 본원의 서기 업무를 관장한다.</p> <p>④ 부서기 : 본원의 서기를 보조한다.</p> <p>⑤ 회계 : 본원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p> <p>⑥ 부회계 : 회계를 보조한다.</p>	<p>제11조 임원회</p> <p>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구성한다.</p> <p>① 이사장 : 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실무 부이사장 : 의장을 보좌 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을 대행한다.</p> <p>③ 부 이사장 : 의장을 보좌 한다.</p> <p>④ 서기 : 본원의 서기 업무를 관장한다.</p> <p>⑤ 부서기 : 본원의 서기를 보조한다.</p> <p>⑥ 회계 : 본원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p> <p>⑦ 부회계 : 회계를 보조한다.</p>
<p>제4장 실행이사회</p> <p>① 목적 : 본원의 권역별 지회나,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 사업의 실제적 집행에 관한 평가, 제안 등을 제공함으로써 본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p>	<p>제4장 실행이사회</p> <p>① 목적 : 본원의 권역자립위나,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 사업의 실제적 집행에 관한 평가, 제안 등을 제공함으로써 본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p>
<p>제13조 목적과 기능</p> <p>② 기능 : 본원의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 신규 사업 제안, <u>미자립교회</u> 등 현장의 수요에 대한 사업 반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본원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p>	<p>제13조 목적과 기능</p> <p>② 기능 : 본원의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 신규 사업 제안, 미래자립교회 등 현장의 수요에 대한 사업 반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본원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p>
<p>제5장 권역별 지회</p> <p>제17조 목적과 기능</p> <p>① 목적 : 권역내의 <u>미자립교회</u>를 파악하고 노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활성화 하고 이사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p>	<p>제5장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p> <p>제17조 목적과 기능</p> <p>① 목적 :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회(약칭 권역자립위)는 권역 내의 미래자립교회를 파악하고 노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활성화 하고 이사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p>



원안	수정안
<p>제18조 조직과 구성</p> <p>① 권역은 서울, 서북, 경기, 중부, 전북, 광주전남, 대경, 부울경으로 한다.</p> <p>② 권역지회장 : 권역을 대표하며 권역내의 자립지원 활동을 관장한다.</p> <p>③ 서기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서기업무를 책임진다.</p> <p>④ 회계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회계 업무를 책임진다.</p> <p>⑤ 총무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사무행정을 책임진다.</p> <p>⑥ 위원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별 지회 활동에 참여한다.</p>	<p>제18조 조직과 구성</p> <p>① 권역은 경기, 광주전남, 대경, 부울경, 서북, 서울, 전북, 중부로 한다.</p> <p>② 권역 교회자립지원위원장 : 권역을 대표하며 권역 내의 자립지원 활동을 관장한다.</p> <p>③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p> <p>④ 서기 : 위원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서기업무를 책임진다.</p> <p>⑤ 회계 : 위원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회계 업무를 책임진다.</p> <p>⑥ 총무 : 위원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사무행정을 책임진다.</p> <p>⑦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p> <p>⑧ 각 권역은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권역 임원과 각 노회 자립지원위원장으로 한다.</p>
<p>제19조 운영</p> <p>권역별 지회는 본원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회장 책임하에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p>	<p>제19조 운영</p> <p>권역 자립위는 본원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책임하에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권역별 연간 사업과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p>
<p>제8장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p>	<p>제8장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p>
<p>제25조 목적</p> <p>①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5조 목적</p> <p>①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약칭 노회자립위)는 노회 내 미래자립교회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6조 권한과 책임</p> <p>① 미자립교회 파악</p> <p>② 자립지원 예산 편성 지도 및 시행 감독</p> <p>③ 균형,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미자립교회의 지원 유지</p> <p>④ 노회 내 재정 미흡 시 권역별 지회나 본원에 신속히 보고하여 균형잡힌 지원 노력</p>	<p>제26조 권한과 책임</p> <p>① 미래자립교회 파악</p> <p>② 자립지원 예산 편성 지도 및 시행 감독</p> <p>③ 균형,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미래자립교회의 지원 유지</p> <p>④ 노회 내 재정 미흡 시 권역자립위나 본원에 신속히 보고하여 균형잡힌 지원 노력</p>